

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 과정(제6조제1항 관련)

1. 교육 과목 구성

과목	주요 내용	교육 시간(단위: 시간)
계		65
노후준비 총론	- 노후준비의 필요성 및 노후준비 진단지표 - 생애전환기에 대한 이해 - 상담에 대한 이해 - 노인의 심리·사회적 특성 변화	13
재무설계	- 노후소득보장 일반 - 다층적 연금보장체계에 대한 이해 -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- 개인신용 관리 및 부채 관리 - 재무설계 실습	20
건강설계	- 노후 건강생활의 이해 - 의료보장제도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- 노인복지서비스 이해 - 건강설계 실습	8
여가설계	- 여가의 개념과 특성 - 노후의 여가생활 - 사회활동서비스 - 여가설계 실습	6
대인관계 설계	-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 - 노후 대인관계 상담사례 - 대인관계설계 실습	7
경력관리 설계	- 노년기 일의 의미와 실태 - 노인일자리 정책 - 경력관리설계 실습	5.5
주거설계	- 노후주거의 이해 - 노후주거 계획 - 주거설계 실습	5.5

2. 이수 방법

가.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제 1호에 따른 교육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
나. 교육 시간 중 90% 이상을 학습하고, 과제 및 시험 등 평가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다. 보유 자격에 따른 교육 중 면제받을 수 있는 과목

보유 자격	교육 과목
- 사회복지사 2급 이상	- 노후준비 총론
- 한국재무설계사(AFPK) - 국제재무설계사(CFP)	- 재무설계
- 보건교육사	- 건강설계
- 생활체육지도사	- 여가설계
- 건강가정사	- 대인관계설계
- 직업상담사	- 경력관리설계